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저광물자원 탐사채취 시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사용수용 및 보상 근거 마련〉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3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6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4.
3. 회부연월일 : 2025.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해저조광권자의 해저광물 탐사·채취 시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사용·수용 및 손실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u>토지수용</u>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u>토지</u> 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제30조(<u>토지등의 수용</u> 등) ① ----- ----- ----- <u>토지</u> <u>·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u> <u>나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u> <u>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u> <u>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관한 권</u> <u>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u> ----- ----- ----- -----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u>토지의</u>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 ----- ----- ----- ----- <u>토지등의</u> ----- ----- ----- -----.

현행법¹⁾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물건 및 권리²⁾(이하 “토지등”)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동법 제4조 및 제4조의²³⁾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0조(토지수용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실시하는 해저광물 탐사 또는 채취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함.

그런데 해저조광권자의 해저광물자원 개발과정에서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토지의 취득·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만 규정하고 있고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외에 건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을 사용·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익사업인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어업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현행법은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 외의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사용·수용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저광물 탐사·채취 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양식업권의 제한 등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는 어업인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저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의 근거법률인 「한국석유공사법」⁴⁾은 석유의 탐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토지 외에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4) 「한국석유공사법」

제17조(토지의 수용·사용)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개발·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해저광물 탐사·채취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 등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보상법」 제76조⁵⁾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⁶⁾에 따라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64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광업권의 평가) ①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②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③ 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